

#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5월 23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5월 23일

3. 제안이유

○ '95. 1. 1 개정된 지방세 조례 내용중

- '94. 12월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 제정 규정 삭제

- 현행 조례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조치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 종전에는 납기를 정하여 부과되지되는 세목에 한하여 납기한이 연장되고,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통지·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함.

○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

- 감면시 신고규정을 지금까지 조례의 세목별에 규정하였으나
- 감면에 관한 신청규정은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였음

## 5. 검토의견

충청북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현행 조례상 불필요 또는 규정의 불분명에서 오는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규정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이행이 곤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례규정을 두지않고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9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바

현행조례조문의 적용 법조문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과

또한 납기한 연장규정에 있어서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와 부과지로 양분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연장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문제발생과 해석의 불분명에서 오는 적용상의 문제점을 일소하기 위해 현행조례 조문의 『납기한』을 『기한』으로 통일시키므로써 지방세의 모든 세목에 있어 신고·납부·통지·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함과 아울러 별도의 법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삭제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6. 칙 부

충청북도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